

거창군 마을 공동이용시설물 관리조례안

의안	
번호	

발의연월일 : 2005년 11월 일

발의자 : 이수정 의원 외

1. 제정이유

- 자연마을 단위로 마을회관이나 주차장 등의 공동시설물을 설치하여 주민들이 상시 이용하고 있으나,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어 관리가 소홀하거나 책임의식이 희박한 실정이고,
- 경로당의 보일러 등과 같이 시설물의 노후 등으로 교체나 보수를 할 때 주민 부담으로 정비하고 있고 공동시설물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유지관리에 따른 주민부담이 가중되는 실정으로 시설물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정비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마을 공동 이용시설물은 마을이장이 책임 관리하도록 함(안 제3조)
- 군수는 마을 공동이용시설물의 유지 관리를 위해 지도·감독을 하도록 함(안 제4조)
- 사업비 지원 대상은 유지 관리 및 정비에 필요한 사업비로 1천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(안 제5조).
- 대상자는 3월말까지 선정하여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후 사업 시행(안 제6조, 제7조)

3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15조

거창군 마을 공동이용시설물 관리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마을 공동이용시설물의 이용과 유지 관리 및 정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시설물의 종류) 이 조례에서 관리하는 마을 공동 이용시설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마을회관, 경로당 등 주거용 건물
2. 놀이터, 쉼터 등 마을 휴게 시설물
3. 공동 창고, 공동 주차장 등 마을 편의 시설물
4. 기타 마을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물

제3조(시설물의 관리) ①마을 공동 이용시설물은 마을 이장이 책임 관리하여야 한다.

②마을 공동이용시설물은 마을 주민의 후생복리를 위해 마을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하여야 한다.

제4조(지도·감독) ①군수는 마을 공동이용시설물이 마을에서 공동으로 이용하고 유지 관리 하도록 지도·감독 하여야 한다.

②군수는 마을 공동이용시설물의 유지 관리 및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5조(지원대상) 사업비 지원 대상은 제2조의 마을 공동 이용시설물의 유지 관리 및 정비에 소요되는 사업비로서 단위당 사업비가 1천만 원 이내인 소규모 사업을 그 대상으로 한다.

제6조(사업의 신청) ①시설물의 정비를 위하여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해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

신청하여야 한다.

②마을 이장은 사업비 지원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마을의 지도자 등과 협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.

제7조(사업의 시행) ①군수는 사업대상자를 매년 3월말까지 선정하여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②사업대상자는 군수로부터 사업대상자 결정 통지를 받은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.

제8조(사업비 지급) ①사업대상자는 사업이 완료되면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사업비를 청구하여야 한다.

②군수는 청구서가 접수되면 사업완료를 확인한 후 14일 이내에 사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.

제9조(준용) 지원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본 조례에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『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』를 준용할 수 있다.

제10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1호 서식

거창군 마을공동이용시설물 정비 지원신청서

사업명 :

신청인	마을명	
	대표자(이장) 성명	
	주민등록번호	
	연락처	
사업내용	정비대상시설물명	
	시설물의 소재지	
	정비기간	
	정비내용	
소요사업비	총 소요액	
	산출근거	
	신청금액	

거창군 공동이용시설물 관리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.

200 년 월 일

신청자

- 마을대표(이장) (인)
- 남자지도자 (인)
- 부녀지도자 (인)

거창군수 귀하

※ 첨부 서류 : 사업계획서(도면 등)